

VIII. 과태료 부과기준

○ 법적근거 :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별표4

위반행위	근거법령	과태료 금액
1. 법 제9조제4항, 제26조, 제73조의2제1항,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1호	80만원
2.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2호	50만원
3. 법 제18조제2항·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3호	50만원
4.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1호	200만원
4의2.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2호	200만원
5.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4호	80만원
6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(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)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5호	80만원
7.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3호	200만원
8. 법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4호	200만원
8의2.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4호의2	200만원
9. 법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08조제2항제6호	50만원
10. 법 제73조의8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,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5호	200만원
11.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6호	200만원
12. 법 제94조에 다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08조제1항제7호	200만원